

#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정보를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서울 지방법원 98카합1699 결정)

## 1. 사건 배경

최근 국내에서는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일반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독특하게 재구성한 데이터베이스라면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복제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라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원시 정보를 직접 수집,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하겠다. 이번 결정은 정보제공업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하 판결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법원의 결론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짚어본다.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LG** 정보통신(구 금성정보통신 주식회사)은 1989년 경부터 GINS라는 이름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콜리스 법률정보, 조세통람사 세무정보, 각종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입찰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해서는 1993년 3월경부터 본 사건의 신청인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으로부터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해 오고 있었는데, 1993년 11월경부터는 한국입찰정보 시스템이 담당하던 입찰 정보 중 조달청 입찰정보 부문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조우회(조달청 퇴직 근로자들로 구성됨)가 담당하게 되었고 한국입찰정보 시스템은 조달청 이외의 기타 기관 입찰정보 부문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2월경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이 LG정보통신과 정보 제공 계약 해지를 함에 따라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이 제공해오던 조달청 이외의 기타 기관 입찰정보 부문의 정보제공에 관해서 본사건의 피신청인이 LG정보통신에게 정보 제공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다른 신청인인 일주데이터시스템 주

식회사는 조우회로부터 입찰정보를, 신청인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달청 이외의 기타 기관 입찰정보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함이 없이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의 전산망에 제공하고 있다. 조우회는 1998년 1월경부터 LG 정보통신에게 조달청입찰공고에 관한 정보제공을 중단하고 신청인인 일주데이터시스템에만 정보제공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그 해 LG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3월 16일 피신청인은 LG정보통신으로부터 GINS 사업부문을 양수받아 같은 해 4월 1일부터 정보 제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조우회는 피신청인에 대해서도 조달청 정보제공을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우회가 조달청 입찰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자신의 직원 '갑'으로 하여금 일주시스템의 조달청/입찰정보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해 하여 위 서비스로부터 정보를 이용케 하였다. '갑'이 회비 연체 및 무단 복제 의심으로 이용 강제해지 당하자 다른 직원인 '을'로 하여금 다시 위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을' 역시 무단 복제에 대한 의심을 받고 강제

해지 당하였는데, 이들은 다른 회원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죄다 이용시간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입찰정보 이용현황에 있어서도 다른 이용자들이 내자, 외자 등 어느 특정 하나의 정보에 대하여 주로 이용하는 경향과는 달리, 동시에 내자, 외자, 시설의 모든 부문을 비슷한 시간으로 검색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은 피신청인의 무단복제를 의심하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의로 오타를 기입하여 전산망에 올렸는데, 피신청인 역시 위 정보에 관하여 신청인과 동일한 오류를 가진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산망에 올린 것이다. 이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단복제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하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무단복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2 당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 (1) 일주 데이터시스템의 정보제공화면 구성

- ‘조달청’이라는 제목하에 [내자] [외자] [시설] [관련정보].

- ‘기타기관’이라는 제목하에 [내자] [시설].

- ‘부가정보’라는 제목하에 [예비가격 계산]가 배열되어 있고,

- 조달청 입찰정보에 관한 화면의 상단에는 ‘사단법인 조우회(02)596-6366’이라고 표시하고, 기타기관 입찰정보 부문에 관한 정보에 관한 화면의 상단에는 ‘한국입찰정보시스템 (02)525-1211’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그리고 입찰결과를 알려주는 화면에는 계약기관, 관리번호, 공고번호, 수요기

관, 품목, 입찰일자, 지역제한여부, 입력일자 등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예정가격과 추첨예가 4가지를 표시하고 있다.

### (2) 피신청인의 정보제공화면 구성

- 초기화면에 11. 조달청입찰정보, 21. 기타기관입찰정보, 31. 공지사항, 41. 예비가격산출(88%), 42. 예비가격산출(90%), 43. 예비가격산출(15종), 90. 입찰관련공고, 91. 입찰관련법규 …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 입찰결과 등 상세화면에는 조우회나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관, 관리번호, 공고번호, 수요기관, 품목, 입찰일자, 지역제한여부, 입력일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3 신청인들의 주장

- 피신청인은 별제 제1목록(신청인들이 국내외 모든 전산망에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의 입찰정보와 관련한 모든 저작물) 기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소지, 수출, 국내외의 모든 전산망에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신청인의 별지 제2목록(피신청인이 국내외의 모든 전산망에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의 입찰정보와 관련한 저작물) 기재 저작물에 대한 국내외의 모든 전산망에서의 삭제, 피신청인이 국내외의 모든 전산망에 위 저작물을 제공하는 회선의 폐쇄, 기

타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국내외의 모든 전산망에 위 저작물을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의 별지 제3목록 기재(제2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 사무실과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쇄물과 디스크, CD-ROM,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기억장치 및 위와 같은 내용이 수록된 모든 형태의 복제물)의 복제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4 판결 요지

-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신청인들이 국내외 모든 전산망에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의 입찰정보와 관련한 모든 저작물) 기재 저작물 중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 주식회사가 신청인 일주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 운영의 전산망에 제공하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수출, 국내외의 전산망에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외 한국입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의 나머지 신청 및 일주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의 신청은 기각한다.

## 5 판결 이유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입찰정보는 그 정보 소재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검색화면 구성 등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신청인이 신청인 일주데이터시스-



템을 통하여 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정보를 복제하여 새로운 상업적 이용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자신의 직원들을 통하여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위정보를 무단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한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결과는 같다)

그러나 입찰결과에 대한 화면 구성에 있어서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그것과 피신청인의 그것이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의 화면 구성이나 검색조건 등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두 화면 구성의 구성 요소 중 계약 기관, 관리번호, 공고번호, 수요기관, 품목, 입찰일자, 지역제한여부, 입력일자의 요소는 이를 제외시키기 곤란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위 요소를 포함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그 창작성이 부인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정보제공 화면 구성 자체가 신청인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이나 조우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별지 제2목록 (피신청인이 국내외의 모든 전산망에 전송하여 불특정 사용자가 검색,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의 입찰정보와 관련한 모든 저

작물)과 같이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 일주데이터시스템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일주데이터시스템의 신청은 이유없다.

## 6. 필자의 견해

위 법원의 결정 내용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하여 양당사자의 공정성을 따져볼 때 적절한 결론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없이 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추출하여 신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서, 만일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무단복제 행위를 방지하지 않는다면 정보 수집, 디지털화 그리고 기타 가공을 위해 기울인 신청인의 시간, 노력, 돈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의 원고 승소 결정은 형평상 적절한 결론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다음 2가지 점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첫째는 신청인의 입찰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음을 판시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며, 둘째 저작물성을 인정받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본다.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면 '소재의 선택·배열의 창작성' 여부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입찰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보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혹은 배열함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핵심이다. 법원은 입찰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여부에 대해 '정보 소재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검색화면 구성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의한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창작성 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피신청인이 정보 소재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행위가 있었는지, 그 소재들을 DB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창작적인 배열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단지 모방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였다면 창작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그럴 경우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요구했었던 저작권법 제6조의 입법적 의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함에 있어서 편집저작물에 의한 보호 방법을 DB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의 검색, 처리 가공, 축적 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데에 그

특징이 있으므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그 자체에 있어서는 독창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즉 신문이나 판례를 일자 순으로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어떠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 할 지라도 정보 수집 등 그 제작 과정에 소요된 노력과 시간, 돈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기가 극히 용이하므로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제작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이같은 특징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편집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편집저작물에 의한 보호 방법에 포함시킨 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성의 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해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법 해석상의 입장에서 볼 때 창작성 여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단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대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저작권법상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 둘째 피고에 의해 저작자의 저작물의 도용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인 저작물의 도용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다음 두가지 경우를 만족할 때 피고의 도용이 추정된다. 첫째,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도용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졌는가 하는 '접근' 가능성 여부와 둘째,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i) 침해 대상물(한국입찰정보의 입찰 정보 데이터베이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ii) 피신청인이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접근하고 있는가 iii) 침해물(피신청인의 입찰정보 데이터베이스)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두 번째 조건인 접근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상의 오타가 피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된다 는 사실은 접근 가능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이 본 판례에서 판시한대로 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성이 있다는 결론에 대해서 일단 긍정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DB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침해판단의 마지막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두 당사자의 DB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규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의 대상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근거인 '창작성 있는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 그 자체가 되어야지 소재 정보 각각에 대한 유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은 창작성이 있

는 부분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 유사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영식 ·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 개설」, 화산문화 1997, p246. 참조).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에 대한 판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91다 1479 판결, 61나 1243판결 등 다수), 그 중 연표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결(93마 1081 결정)에 따르면 '편집 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 판례의 결정 이유를 살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작물성이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 재이용하는 것은 침해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정보의 추출, 재이용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바이나 저작권법의 해석상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전 판례를 살펴면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그 편집저작물에 축적된 개개의 정보를 보호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 1482 판결이 바로 그것으로서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

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일 경우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도형 각각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례의 판시 이유가 적절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원고가 기존에 존재하던 전통 문양 등의 도형들을 어떠한 변형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으나 원고 자신만의 표현 기법으로 도형을 재현, 수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 특유의 표현기법에 의한 그 도형의 도안은 원고의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도형을 표현함에 있어 원고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고의 도형의 표현에 대한 저작물 침해로 보아야지,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도형 그 자체를 원고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데이터베이스가 신청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배열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증명하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데이터베이스 침해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차이가 인정된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입찰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입찰정보 각각의 정보를 무단 복제한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지은 것은 과연 법해석상 적절한 것 이였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DB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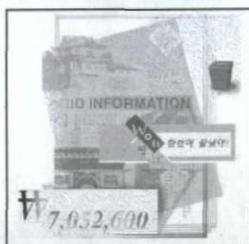
보를 추출, 재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결론에는 수긍하면서 이상과 같이 판례의 판시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법으로 '소재의 선택·배열의 창작성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수집 과정은 자료의 가치성에 따른 선별적 작업에 의하기보다는 그대로 망라하는 기계적인 수집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편집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소재의 선택에서의 창작성'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어울리지 않는 요건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세계적으로 진작부터 제기되어온 바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이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외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지침서에 따르면 비록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소재의 추출·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재 정보 수집에 들인 시간, 돈, 노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번 한국입찰정보시스템 판례는 법 해석상 다소 이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폭넓게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무단 복제에 의한 침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선도적인 DB제작자들에게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의미있는 판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법 해석상 불충분한 면이 많이 엿보이며 경우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번 한국입찰정보시스템 사건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표면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여겨지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에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는 정보를 분석·정리 및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범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종래부터 표준화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뿐 아니라 소재정보의 배열 방법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라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그 배열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배열에 있어서의 창작성' 요건 역시 데이터베이스 보호 요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대상은 기존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 근거였던 독창성 혹은 창작성이라기 보다는 제작 과정에 투여된 노력, 시간, 돈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여야 한다.